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PP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5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PP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조의4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PP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조의4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에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홈쇼핑PP를 제외한 PP(이하 “중소PP”)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4(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제7장에서 방송발전의 지원을 위하여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등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소PP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법 제69조제1항²⁾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공성, 다양성 등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³⁾에서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소PP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

2)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PP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800억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800억원 이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는 2023년 기준 142개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활발한 국내 진출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PP를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P는 사업자별 전문화된 콘텐츠(예: 낚시, 볼링, 시민사회 등)를 제공하여 유료방송 콘텐츠 다양성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최근 경영상황 악화로 제작비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어,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용 입장임.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10억원 미만의 PP는 2021년, 2022년 각각 102개였으나 2023년에는

117개로 증가하여 중소PP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 적자PP 역시 2021년 44개, 2022년 46개, 2023년 56개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3년 중소PP의 영업현황 >

(단위: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이익 10억원 미만PP	102	102	117
영업적자 PP	44	46	5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과기부는 중소 PP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일반회계 등 정부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인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PP산업 장려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PP로 조정하되, 제외대상에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MSP사업자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러한 협회의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매출액 1천억

4) MSP(Multiple System Operator and Provider)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의 별도 정의는 없으며, 매년 발간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1년도까지 SO, PP간 결합사업자를 MSP로 분류하였으나 '22년도 보고서부터는 MSP부문을 삭제하였음. 협회는 MSP를 IPTV, OTT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PP로 지칭하였으나, 협회의 정의대로 MSP에 IPTV와 OTT 결합 PP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원 미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큰 차이가 없어서 개정안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3년 매출액 기준 800억원 이하 PP수는 142개, 1,000억원 이하 PP수는 144개으로, 1,000억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할 경우 2023년 매출액 기준 (주)초록뱀미디어(823억원), (주)한국경제티브이(813억원)이 개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됨.⁵⁾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PP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소PP의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과기부의 수용 의견과 지원 대상자의 규모 등에 대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수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5)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